

제2023-8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선박번호 : IMO Number 9975959

항 로 : 포항 - 울릉(도동, 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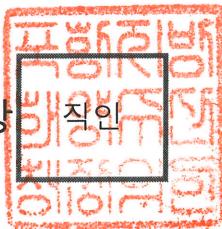
사업자명 : (주)대저페리

사업자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10mm×297mm[백상지 150g/m²]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운항관리규정
(내항여객운송사업)

2023년 10월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0	2023.07.06	전장	제정
1	2023.10.11	제7장	제21조(여객업무) ②항 추가 - 제한 · 통제구역 출입제한
		제5장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용어수정 : 선장제세동기 → 자동심장충격기
		불임9	Engine Part PMS 항목 내용 수정 : 유수분리기
		불임19	안전관리조직도 개서 - 관리팀 → 인사총무/재무기획팀 -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변경(윤영상 → 박영진)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1-1
제1조(목적)	1-1
제2조(용어의 정의)	1-1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1
제3조(안전관리 목표)	2-1
제4조(안전관리 방침)	2-1
제5조(방침 등의 숙지 및 확인)	2-1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2-1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3-1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3-1
제8조(안전관리조직)	3-1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4-1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4-1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4-1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4-3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4-3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5-1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5-1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5-1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6-1
제15조(채용·배송관리)	6-1
제16조(인수인계)	6-1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7-1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7-1
제18조(항해업무)	7-1
제18조의2(야간항해)	7-9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7-10
제20조(통신업무)	7-11
제21조(여객업무)	7-11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7-13
제23조(화물관리)	7-14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7-15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7-15
제26조(정박 및 계류)	7-16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7-17
제8장 비상상황 대응	8-1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8-1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8-1
제29조(비상대응)	8-1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8-3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8-4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9-1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9-1
제33조(육상설비 점검)	9-1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9-1
제35조(유류관리)	9-2
제10장 자료관리	10-1
제36조(문서관리)	10-1
제37조(문서생산 등)	10-1
제38조(문서관리대장)	10-2
제39조(문서의 폐기)	10-2
제40조(해도관리)	10-2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10-2
제41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10-3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11-1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11-1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11-1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11-1
제45조(규정의 적용)	11-2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9]**붙임목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 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항해계획” 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 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3. “화물의 적재한도”란 「선박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제12호의 차량적재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내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말하며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4.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5.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안전운항
2. 환경보호
3.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4. 고객만족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 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화물 집계표 확인 및 정확한 화물

계측 실시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 · 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 · 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본사 및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주)대저페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	054-240-8120 (054-791-1899)

나. 관할구역

- 울릉 사동 및 도동 항내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울릉도 사동항 및 도동항 내 안전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안전운항 확보
- 여객명부 보관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여객정원 및 화물 적재 중량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여객승하선용, 화물적하 시설관리 및 제반 안전사고 예방조치 업무

2. 포항본부(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주)대저페리 포항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054-240-9910 (054-728-9388)

나. 관할구역

- 항로 : 포항 - 울릉(도동/사동)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선장에게 전달
- 전항로/전구간 안전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안전운항 확보
- 여객명부 보관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여객정원 및 화물 적재 중량의 준수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여객승하선용, 화물적하 시설관리 및 제반 안전사고 예방조치 업무
-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선원의 배승 및 휴가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정비계획 수리 집행 및 선박검사 수검준비에 관한 업무
- 관계기관 등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에 관한 업무
-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9]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 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자체 없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이하 “운항관리센터”라 한다)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한다.
6.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 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 ②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석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및 기타 비상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3.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 ③ 회사의 규모 및 안전관리조직 인원에 따라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대행을 선임안전관리책임자에게 하며, 업무대행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포항본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사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¹⁾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자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 · 관리
 5.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 ② 화물담당자는 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물의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업무 총괄
 2. 화물의 적재에 관한 선장 ·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1) 「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4와 관련한 별표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한 자

3. 육상작업원에 대한 관리업무 총괄
 4. 화물선적 작업완료 시 선장에게 화물목록 제출
- ③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 · 배송 · 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및 여객안전관리선원에 대한 교육 · 관리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④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선용품 및 기부속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3. 선박의 정비계획과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확인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와 화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권한을 갖는다.
-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항해사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²⁾ 화물관리는 항해사,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선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5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본선 선원이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승진·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승진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승진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 · 기관 · 구명 ·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제원 및 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초쾌속여객선	2023.02.18	3,158톤	6,000kW ×4
선박치수(m)	항해속력	항로	항해구역
76.7×20.60×6.32	45노트	포항-울릉(도동/사동)	연해

②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990명(여객 970명, 선원 14명, 임시 6명)
2. 승무정원 : 증서 상 정원 7명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화물 적재상태
5. 여객 안전 확보 상태
6.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항·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관리청 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는 다음과 같다.

가. 1항로(영일만 36-06.0N, 129-30.0E)

항로	출발지 (기점)	종착지 (종점)	항해속력	항해거리	운항시각
포항-울릉(사동)	포항	울릉(사동)	45노트	113마일	2시간 40분
울릉(사동)-포항	울릉(사동)	포항	45노트	113마일	2시간 40분
포항-울릉(도동)	포항	울릉(도동)	45노트	115마일	2시간 50분
울릉(도동)-포항	울릉(도동)	포항	45노트	115마일	2시간 50분

- 기상악화 등으로 도동항 접안이 불가능한 경우 사동항 이용

나. 2항로(울진 왕돌초 : 36-46.0N, 129-39.0E)

항로	출발지 (기점)	종착지 (종점)	항해속력	항해거리	운항시각
포항-울릉(사동)	포항	울릉(사동)	45노트	121마일	2시간 45분
울릉(사동)-포항	울릉(사동)	포항	45노트	121마일	2시간 45분
포항-울릉(도동)	포항	울릉(도동)	45노트	123마일	2시간 55분
울릉(도동)-포항	울릉(도동)	포항	45노트	123마일	2시간 55분

다. 3항로(울진 죽변 : 37-06.0N, 129-39.0E)

항로	출발지 (기점)	종착지 (종점)	항해속력	항해거리	운항시각
포항-울릉(사동)	포항	울릉(사동)	45노트	134마일	2시간 55분
울릉(사동)-포항	울릉(사동)	포항	45노트	134마일	2시간 55분
포항-울릉(도동)	포항	울릉(도동)	45노트	136마일	3시간 05분
울릉(도동)-포항	울릉(도동)	포항	45노트	136마일	3시간 05분

2. 기점 · 종점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위치)	거리	비고
포항 (36° 03.05N/129-22.78E)	울릉(사동) (37° 27.61N/130-52.73E)	1항로 : 113마일 2항로 : 121마일 3항로 : 134마일	
	울릉(도동) (37° 28.8N/130-54.7E)	1항로 : 115마일 2항로 : 123마일 3항로 : 136마일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 없음

나. 사격 및 훈련구역

1) 해군훈련구역

사격장 명	구역(좌표WGS-84)	발표일 사용고도
R-115 동해 울릉도남방근해	아래 3개 지점 선내해변 37-24-00.0N, 129-45-00.0E 37-13-30.0N, 131-00-00.0E 36-49-00.0N, 131-00-00.0E	1992. 6. 1. 38,000 FT 이하
R-120 동해 포항북동면바다	아래5개 지점 선내해변 36-44-00.0N, 130-25-00.0E 36-25-00.0N, 130-55-00.0E 36-17-00.0N, 130-55-00.0E 36-02-00.0N, 130-29.00.0E 36-02-00.0N, 130-25-00.0E	1994. 1. 15. 38,000 FT 이하

2) 공군 훈련구역

사격장 명	구역(좌표WGS-84)	발표일 사용고도
R-74 동해 포항북방근해	아래 3개 지점 선내해변 36-52-00.0N, 130-00-00.0E 36-50-00.0N, 130-13-00.0E 36-44-00.0N, 130-25-00.0E 36-02-00.0N, 130-25-00.0E 36-02-00.0N, 130-00-00.0E	1989. 7. 1. 50,000 FT 이하

3) 해양경찰청 훈련구역

사격장 명	구역(좌표WGS-84)	발표일 사용고도
R-141 울릉도 동방 근해	아래 4개 지점 선내해변 37-40-05.0N, 131-12-00.0E 37-40-05.0N, 131-25-00.0E 37-30-05.0N, 131-25-00.0E 37-30-05.0N, 131-12-00.0E	300 FT 이하
R-142A 동해안 죽변 연안	37-08-00.0N, 129-34-00.0E를 중심으로 반경 2마일 구역	300 FT 이하
R-142B 동해강구항 근해	36-20-00.0N, 129-50-00.0E를 중심으로 반경 5마일 구역	300 FT 이하
R-142C 동해안 호미곶 연안	36-05-00.0N, 129-45-00.0E를 중심으로 반경 5마일 구역	300 FT 이하

다. 어선조업 · 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없음

라. 관제구역 · 통항분리수역 · 특정해역

1) 포항항 관제구역

구역(좌표WGS-84)	
36-07-16N, 129-25-00E	36-07-16N, 129-26-00E
36-19-11N, 129-26-00E	36-19-11N, 129-43-52E
35-53-32N, 129-43-52E	35-53-32N, 129-37-30E
36-00-11N, 129-37-30E	36-00-11N, 129-34-25E

2) 포항항 교통안전특정해역

구역(좌표WGS-84)	
36-07-16 N, 129-28-24 E	36-00-11 N, 129-36-47 E
36-07-16 N, 129-29-45 E	36-00-11 N, 129-43-52 E
36-03-21 N, 129-29-45 E	36-19-11 N, 129-43-52 E
36-06-33 N, 129-33-32 E	36-19-11 N, 129-27-04 E
36-04-36 N, 129-36-05 E	36-07-16 N, 129-28-24 E

3) 통항분리수역, 특정해역 : 없음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1) 영일만 항로

영일만항 항로	위치
영일만항항로 구역	36-05-33.2 N, 129-27-19.4 E 36-04-22.7 N, 129-27-49.5 E 36-04-22.4 N, 129-29-12.1 E 36-05-04.5 N, 129-29-12.4 E 36-05-04.8 N, 129-29-15.9 E 36-05-16.9 N, 129-27-47.5 E 36-05-39.5 N, 129-27-38.2 E
영일만항항로 통항분리선	36-04-41.9 N, 129-29-12.2 E 36-04-42.0 N, 129-29-38.2 E

2) 영일만 항로표지

항로표 지명	위치
영일만항 분리항로 등부표	36-04-41.8 N, 129-29-12.2 E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1) 1항로

가. 포항 → 울릉(도동, 사동)

연번	보고지점	보고처	VHF ch	MILE	내용	경위도
1	출항보고 (포항 출항 후 10분 이내)	운항관리센터	71	2	출항시각/여객 인원/승무원수/ 화물중량	-
2	A지점 통과		71	36	통과보고	N36-30-00 E129-54-40
3	B지점 통과		71	39	통과보고	N37-00-00 E130-25-20
4	입항보고 (울릉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 완료 직후)		71	38	입항(예정) 시각	-

나. 울릉(도동, 사동) → 포항

연번	보고지점	보고처	VHF ch	MILE	내용	경위도
1	출항보고 (울릉 출항 후 10분 이내)	운항관리센터	71	2	출항시각/여객 인원/승무원수/ 화물	-
2	B지점 통과		71	36	통과보고	N37-00-00 E130-25-20
3	A지점 통과		71	39	통과보고	N36-30-00 E129-54-40
4	입항보고 (포항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71	38	입항(예정) 시각	-

2) 2항로

가. 포항 → 울릉(도동, 사동)

연번	보고지점	보고처	VHF ch	MILE	내용	경위도
1	출항보고 (포항 출항 후 10분 이내)	운항관리센터	71	2	출항시각/여객 인원/승무원수/ 화물중량	-
2	C지점 통과		71	46	통과보고	N36-46-00 E129-39-00 (왕돌초)
3	D지점 통과		71	20	통과보고	N36-57-40 E130-00-00
4	E지점 통과		71	29	통과보고	N37-13-50 E130-30-00
5	입항보고 (울릉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71	26	입항(예정) 시각	-

나. 울릉(도동, 사동) → 포항

연번	보고지점	보고처	VHF ch	MILE	내용	경위도
1	출항보고 (울릉 출항 후 10분 이내)	운항관리센터	71	2	출항시각/여객 인원/승무원수/ 화물중량	-
2	E지점 통과		71	24	통과보고	N37-13-50 E130-30-00
3	D지점 통과		71	29	통과보고	N36-57-40 E130-00-00
4	C지점 통과		71	20	통과보고	N36-46-00 E129-39-00 (왕돌초)
5	입항보고 (포항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71	48	입항(예정) 시각	-

3) 3항로

가. 포항 → 울릉(도동, 사동)

연번	보고지점	보고처	VHF ch	MILE	내용	경위도
1	출항보고 (포항 출항 후 10분 이내)	운항관리센터	71	2	출항시각/여객 인원/승무원수/ 화물중량	-
2	C지점 통과		71	46	통과보고	N36-46-00 E129-39-00 (왕돌초)
3	F지점 통과		71	23	통과보고	N37-06-00 E129-39-00 (죽변)
3	G지점 통과		71	17	통과보고	N37-13-50 E130-00-00
4	H지점 통과		71	25	통과보고	N37-20-50 E130-30-00
5	입항보고 (울릉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71	23	입항(예정) 시각	-

나. 울릉(도동, 사동) →포항

연번	보고지점	보고처	VHF ch	MILE	내용	경위도
1	출항보고 (울릉 출항 후 10분 이내)	운항관리센터	71	2	출항시각/여객 인원/승무원수/ 화물중량	-
2	H지점 통과		71	21	통과보고	N37-20-50 E130-30-00
3	G지점 통과		71	25	통과보고	N37-13-50 E130-00-00
4	F지점 통과		71	17	통과보고	N37-06-00 E129-39-00 (죽변)
5	C지점 통과		71	23	통과보고	N36-46-00 E129-39-00 (왕돌초)
6	입항보고 (포항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71	48	입항(예정) 시각	-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간	위도, 경도
가. 항구를 출입할 때	1. 36-03.1N, 129-22.7E ~ 36-02.0N, 129-24.0E 2. 37° 28.9N, 130-54.6E ~ 37-27.0N, 130-53.0E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 · 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

나. 기상악화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 교행 선박 없음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하여야 한다.(「선박 설비기준」 제93조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 통제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 속	파 고	가 시 거 리
평균풍속 18% 이상	최대파고 3.8m 이상	1km 이내

※ 상기운항 정지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함.

- 가. 포항 출항 시에는 기상청 포항부이 및 울릉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울릉 출항 시에는 기상청 울릉부이 및 포항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 다. 다만, 부이 고장 시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경계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

까지를 말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을 준수하고, 야간운항장비, 항로 여건 및 기항지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 식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를 유지하고, 육안 및 레이더 등을 통해 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3.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4.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5.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6.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

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 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현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운항관리규정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별표2]에 따른 보고사항을 운항관리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선 선원 이외 체험이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등을 출입시키지 아니한다.

- ③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 ④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⑥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⑦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 ⑧ 선장은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 ⑩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전산매표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⑪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거나 전산발권을 하여야 하며, 출항

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송한다. 단, 전자적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승선권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⑫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⑬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총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 「머리조심」 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자동기, 정수기 등)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⑭ 선장은 운항 중 여객이 화물구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조끼 등 사용법
4. 항행시간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 · 가무 등의 금지
 4. 선내에서 흡연 금지
 5. 정원 · 화물 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 · 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 ③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3조(화물관리) ① 화물의 적재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화물의 최대적재중량 : 25.0톤

※ 일반화물은 지정된(불임5 : 화물적재도) 장소를 준수하여 적재한다.

② 선장이 일반화물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장은 적재화물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시 선내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 통로)에는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화물은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출항 15분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한 후 출항 10분전까지 화물램프를 폐쇄하여야 한다.
5. 선장은 화물 적재 배치도에 따라 일반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 가. 갑판 내의 소방설비, 출입구, 계단 주위의 1m 이내 및 통로에는 보호띠를 설치하거나 구역을 표시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나. 기타 사항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6.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이 차량, 화물의 고박상태 등 이상 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적재도를 화물갑판 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 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³ 하여야 한다.
4. 선장은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적재도를 화물갑판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표시하고 일반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장소 : 화물갑판 - 담당자 : 1등항해사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화물의 상태 및 양, 배치
5. 선저폐수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3)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또한 위험물운송적합증서 목록에 있어야 운송가능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기상상태

12.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선장은 운항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10]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밀폐구역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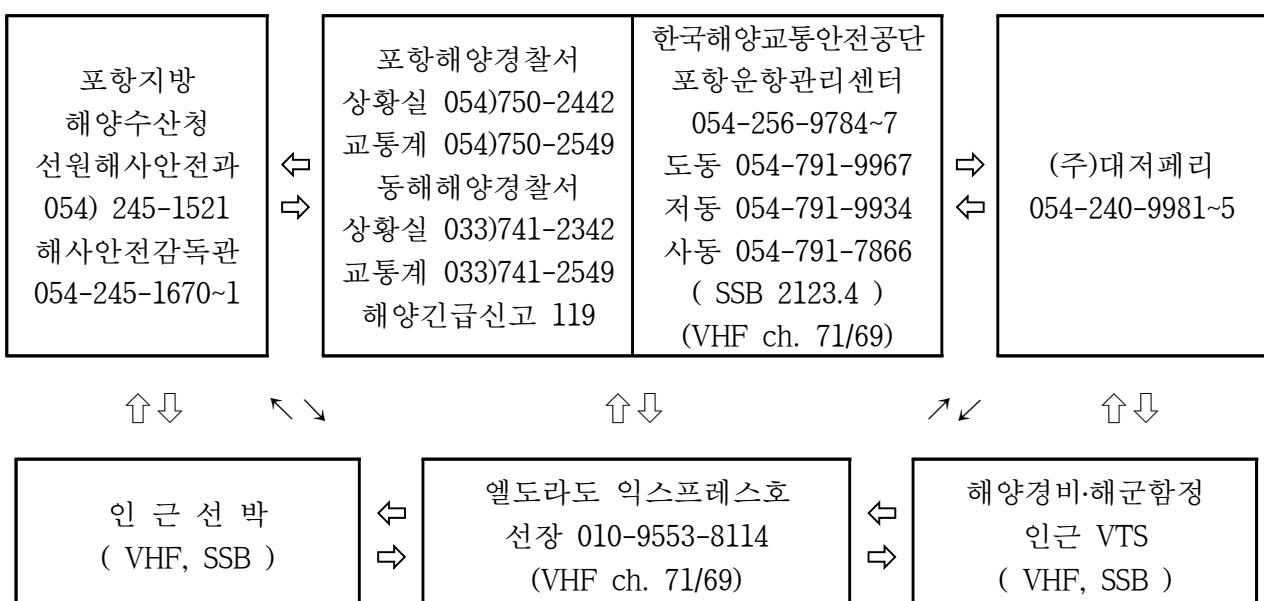
-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 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붙임12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 참고)

퇴선 시 대피장소 담당			
1번 탈출구	2번 탈출구	3번 탈출구	4번 탈출구
항해사C	기관사C	항해사A	항해사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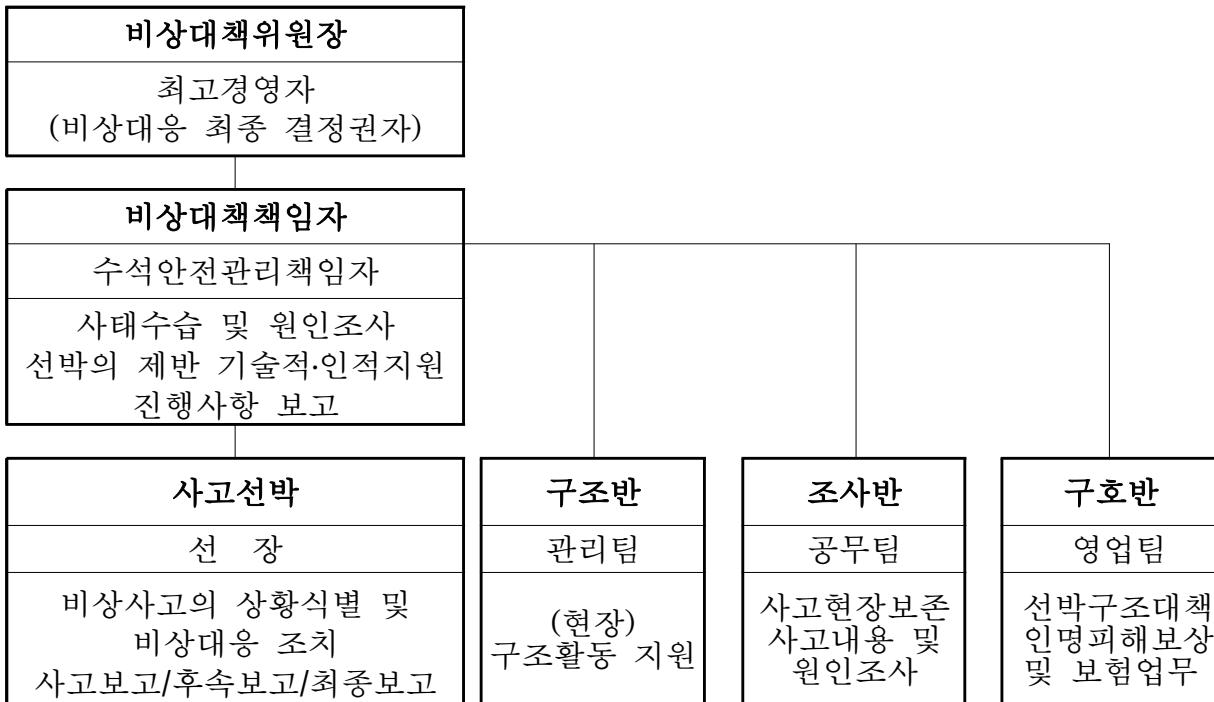
-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비상조직도 및 임무】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 가. 울릉의료원(전화번호 054-790-6871)
 - 나. 포항의료원(전화번호 054-247-0551)
 - 다. 세명기독병원(전화번호 054-275-0005)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사고원인 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강사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행주기 및 시나리오는 [붙임11]과 같다.
-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6]과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기한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3]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

다.

-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갑판 보기류는 접 · 이안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 · 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⑦ 항해등, 기적의 작동 상태 및 종 등의 비치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구명, 소방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35조(유류 관리)
-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

및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조차량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정하며 부서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부서장(부재시 최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5]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 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상을 말한다.)
-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 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 · 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센터,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6]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등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심사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목차

[붙임 1] 항로도

[붙임 2] 일반배치도

[붙임 3] 인명구조장비

[붙임 4] 화재제어도

[붙임 5] 화물적재도

[붙임 6] 선원법정교육 목록

[붙임 7]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붙임 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붙임 9] 선박계획정비표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붙임 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붙임 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붙임 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붙임 15] 문서관리대장

[붙임 16] 내부심사절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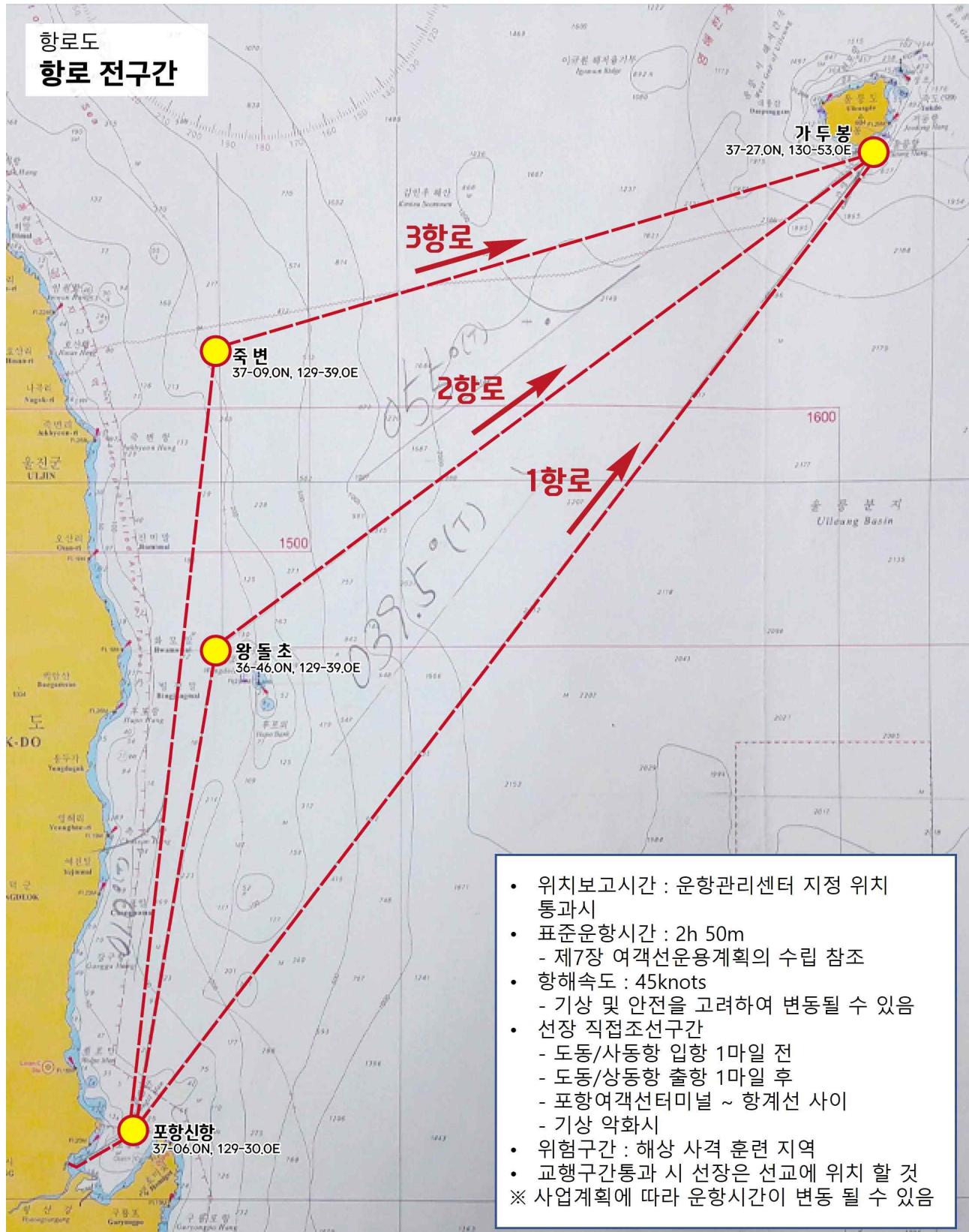
[붙임 17]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붙임 18] 여객선 정기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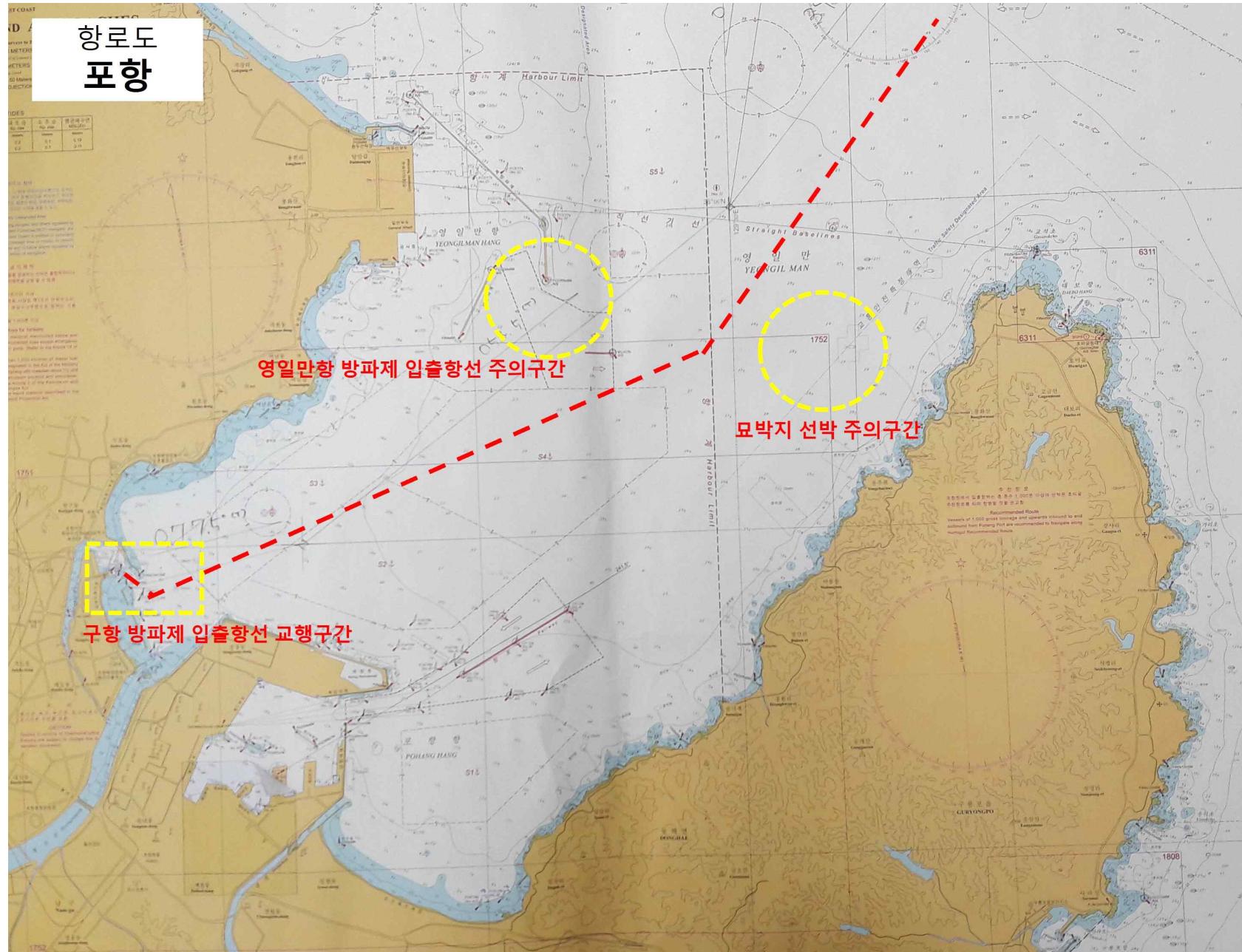
[붙임 19] 안전관리조직도

[붙임 1] 항로도

항로도(전체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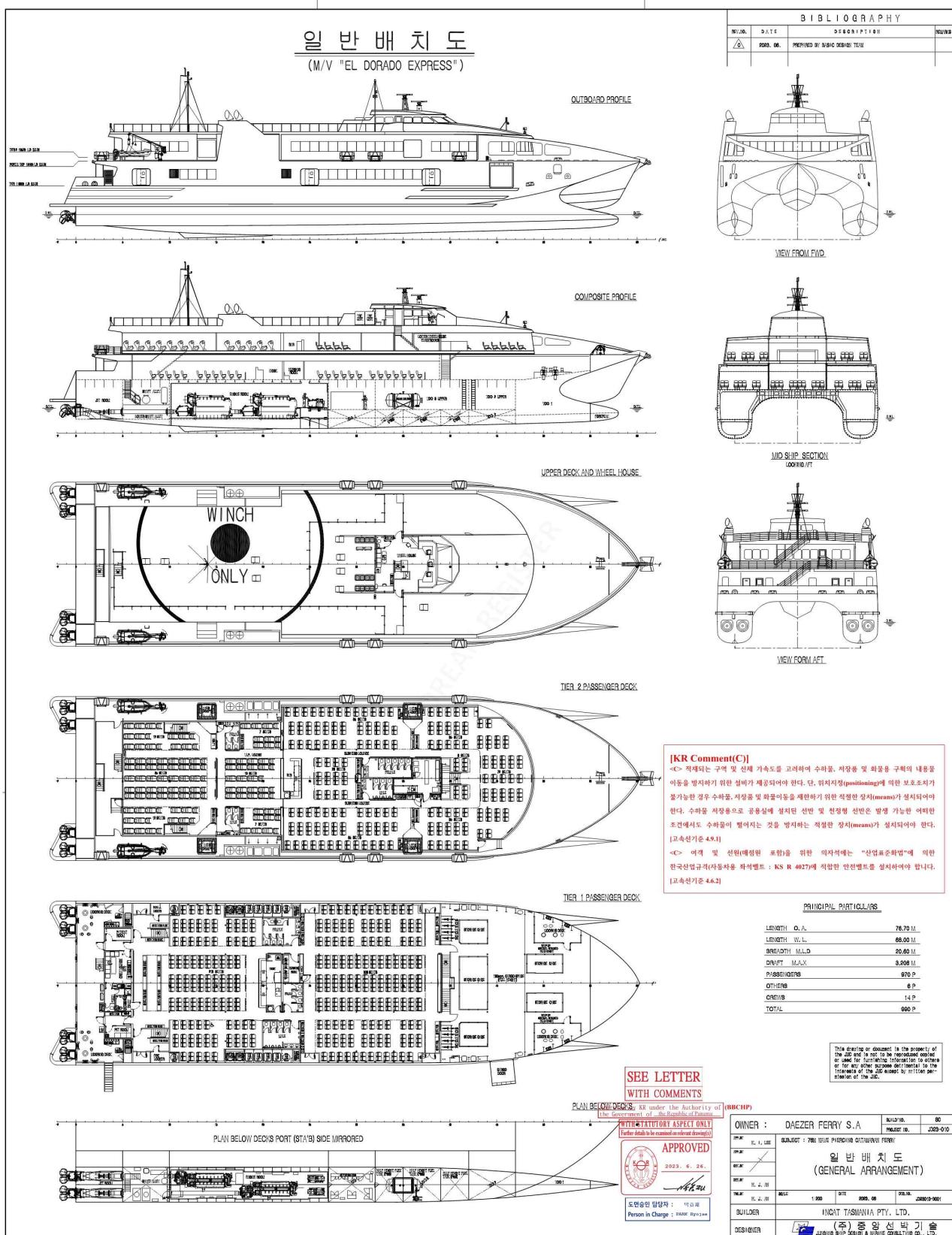


항로도 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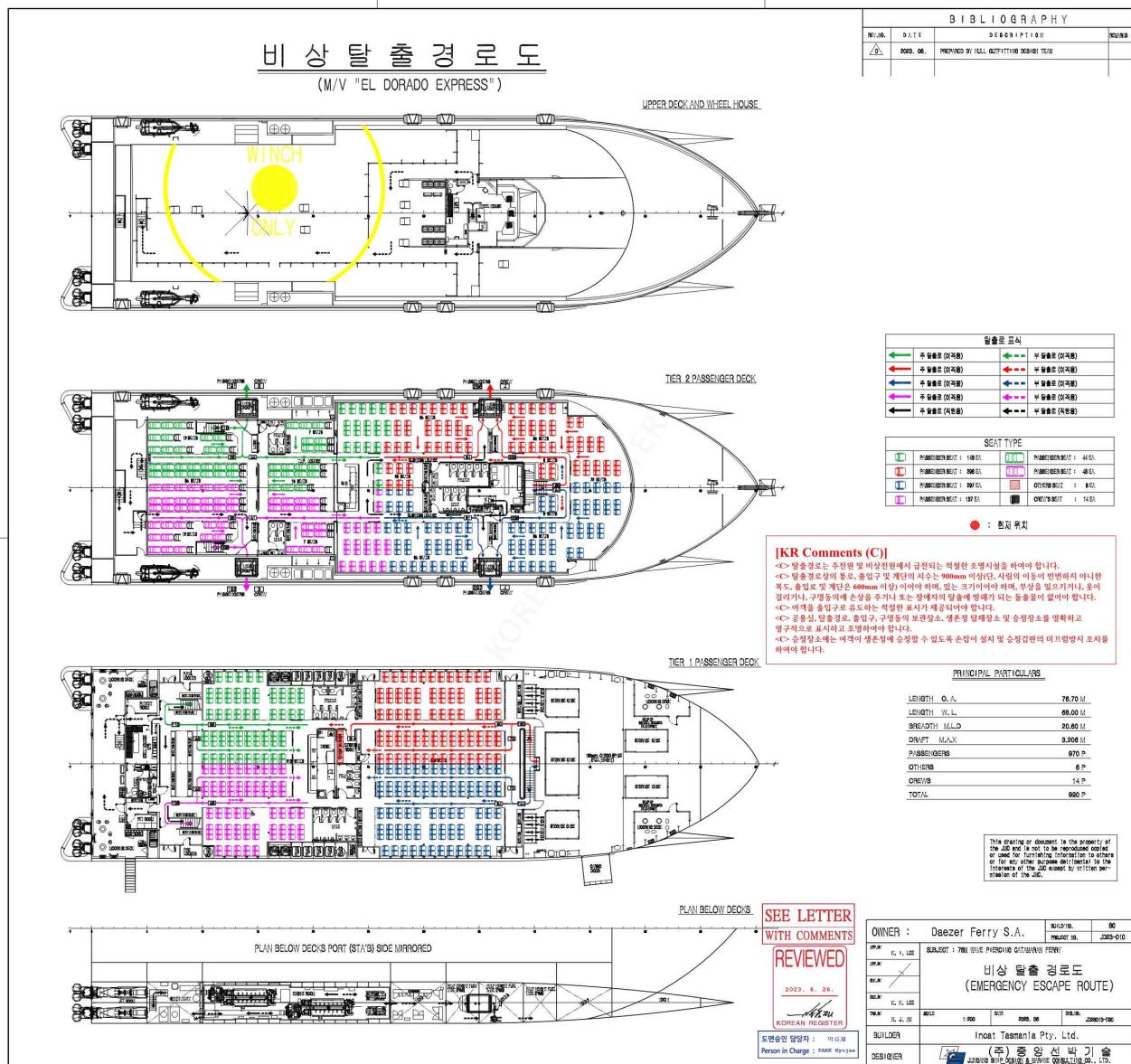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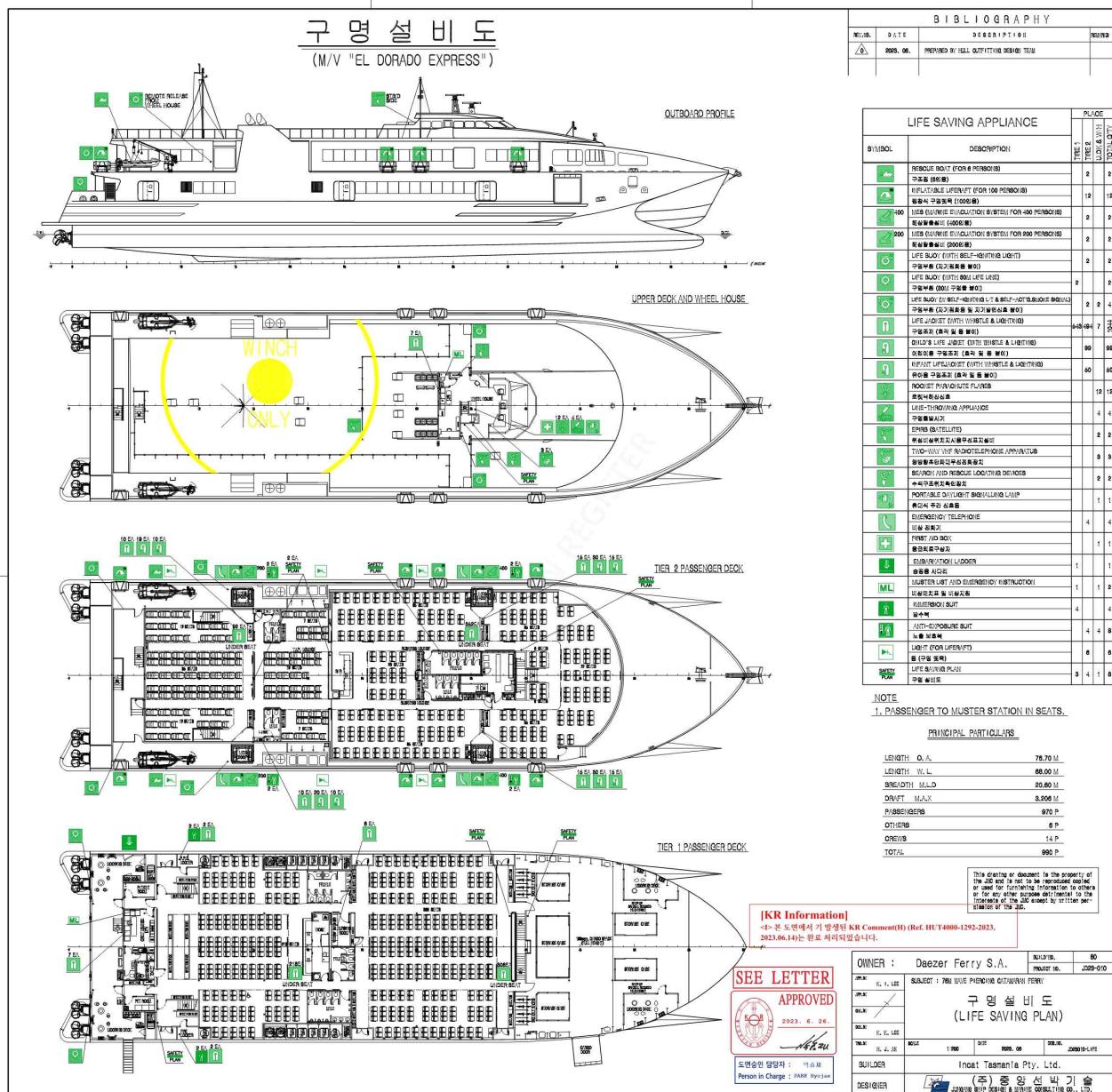


[붙임 2] 일반배치도



[붙임 3] 인명구조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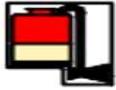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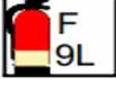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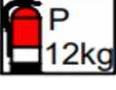




[붙임 4] 화재제어도

도형	소화기 종류	계	위치				
			조타실	1층 객실	2층 객실	기관 구역	화물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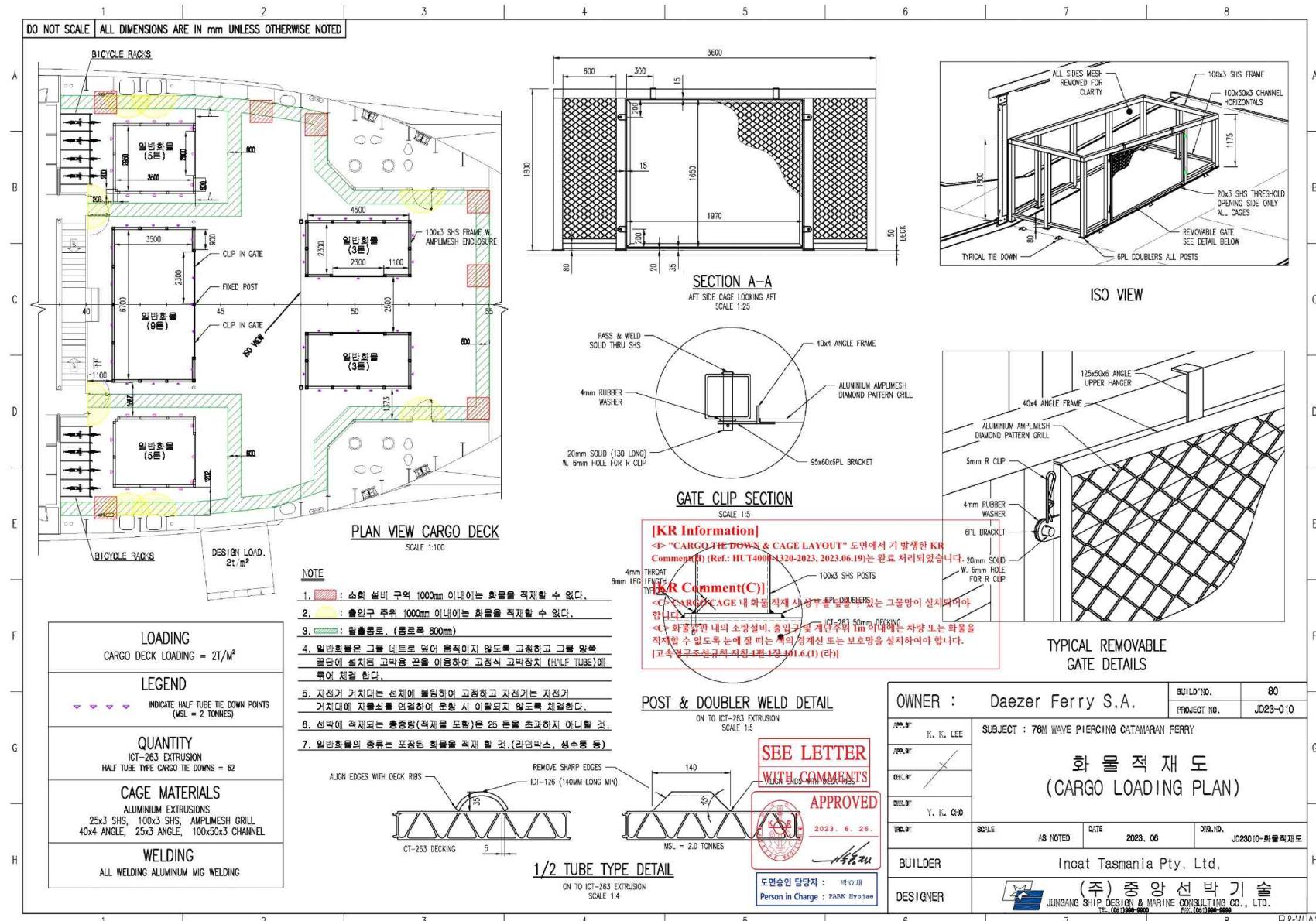
【소화기】

	이동식 FOAM DRUM (20.0L×2)	1					1
	휴대식 포말소화기(9.0L)	12		2	4	6	
	휴대식 분말소화기(6.0kg)	8	1	3	4		
	휴대식 분말소화기(12.0kg)	5				2	3
	CO ₂ 소화기(5.0kg)	2	1		1 (전기실)		

【소화장치】

	소화전	13		3	4	4	2
	소화호스 릴 및 소화호스와 노즐(20M)	9		3	4		2
	소화호스 상자 및 소화호스와 노즐(15M)	4				4	

[붙임 5] 화물적재도



[붙임 6]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육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 기간	관련 법령
기초안전교육	4.5일/재교육 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고속구조정 / 1일	5년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레이더 / 2일	없음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기초(재) / 2(1)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재) / 4(2)일	5년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료관리자 교육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없음	
면허갱신교육	3급 이상 / 3일	5년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급 이하 / 2일	5년	
	통신 / 1일	5년	
당직부원교육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면허전환교육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붙임 7]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1항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위험물	수량 및 질량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1kg
	도화선	3kg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설치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휴대한 고압가스	
	- 압축질소(UN1066)	10.2리터
	- 압축산소(UN1072)	6.2리터
	- LPG(UN1011/1075)	1.5kg
부식성 물질	- 인화성 냉매	10kg
	- 비인화성 -비독성 냉매	40kg
독물류	축전지	2개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인화성 액체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산화성 물질류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도료, 가솔린, 등유	20kg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가연성 물질류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유해성 물질	셀룰로이드	1kg
	안전성냥, 약품류	3kg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드라이아이스		5kg

※ 비고

- 위험물별 수량 및 질량/용량은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휴대·반입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한다.
-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공급 밸브가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 용기는 밸브 보호 마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용 가스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질량(kg)의 경우 가스 내용물의 순질량 기준이며, 용량(리터)의 경우 수(水)용량 기준임
 - LPG, 산소, 질소 용기의 경우 각 1개 이하일 것
 - 인화성 냉매의 경우 질량 5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비인화성-비독성 냉매의 경우 질량 20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용접용 LPG 및 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차량 한 대 또는 한 사람 당 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총 6개 이하일 것. 다만, 250g 이하의 냉매가스를 함유한 소형용기(gas cartridge)의 경우 합계 질량 1kg 이하로 추가하여 휴대 가능
 - 인화성가스 용기와 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도록 적재할 것

[붙임 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1/2	
								년 월 일 시 분	출항
선 명				선박번호					
항로 및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시간 분			
흘 수	선수(船首): m, 중앙: m, 선미(船尾): m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실제 승선인원	(①+②+③+Ⓐ+Ⓑ)명	여객	(①+②+③)명	선원	Ⓐ 명	임시승선자	Ⓑ 명		
			대인 ① 명						
			소인 ② 명						
			유아 ③ 명						
화물의 적재한도 (운항관리규정)							M/T		
실제화물 적재중량 (화물집계표)	(ⓐ+ⓑ+ⓒ) M/T			차량화물		대	ⓐ M/T		
				일반화물		ⓑ M/T			
				컨테이너		개	ⓒ M/T		
위험화물 [차량 및 수하물(手荷物)]	위 치	종 류		수 량	보관형태	특징/비고			
	지정장소 (선수창고 등)								
		화물창							

* 일반카페리선박에 한해 G_o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2/2

선명		선박번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선장 · 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가.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운항관리규정상 법정승무원의 승선을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선교 항해 · 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레이더 <input type="checkbox"/> 컴파스 <input type="checkbox"/> GPS <input type="checkbox"/> AIS <input type="checkbox"/> 음향측심기 <input type="checkbox"/> 항해등 <input type="checkbox"/> 조타기 <input type="checkbox"/> 선내 방송설비 <input type="checkbox"/> VHF <input type="checkbox"/> 기적 <input type="checkbox"/> e-Nav 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전자해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설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 주기 및 발전기, 그 밖의 기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운전상태 또는 사용 준비 상태 확인 - 연료유공급탱크 채움 등 필요한 연료유 확보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기관실 내 위험요소는 제거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동물 고정 <input type="checkbox"/> 인화 · 발화물질의 이동보관, 격리, 제거 <input type="checkbox"/> 누수 · 누유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 선내 소화 · 구명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구명조끼, 소화기 등은 표본 점검 가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 통로 장애물 유무 확인 등 비상탈출로는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 선체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평형수 적재 가능한 일반카페리의 경우 복원성(GoM 등) 추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카. 선내 위험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 여객명부 및 화물목록을 본선에 수령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파. 선원이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자에 한정하여 육안점검 등 시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선장 · 기관장				
가. 갑판설비 등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계선설비 <input type="checkbox"/> 양묘(揚錨)설비 <input type="checkbox"/> 스러스터(Thruster)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설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선박주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타기실 내 누수 · 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여객실 등 여객구역에 구명조끼 등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청결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 승무원이 각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육상 작업원 등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합사항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장	(인)
선장 등과 위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 9] 선박계획정비표

PMS CHECK LIST

M/V : ELDORADO EXPRESS

Deck

EQUIPMENTS	MAINTENANCE ITEMS	LAST DATE	INTERVAL	RECORD DATE CARRIED OUT											
				1	2	3	4	5	6	7	8	9	10	11	12
EPIRB	Perform self-test & Visual inspection	-	1M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Perform extended annual test according to IMO MSC/Circ.1040	-	1Y												
	Replace the HRU including the plastic bolt	-	2Y												
RADAR TRANSPONDER	Check Test Function Good Order	-	1M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onfirm the Expire-Date of Battery	-	3M			10			10			10			10
2-WAY VHF (Including AIR)	General Function Test	-	1M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onfirm Battery Charging Condition	-	1M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FIRE DETECTOR	General Function Check	Zone 1,2,3	-	1M	25						25				
		Zone 4,5,6	-		25						25				
		Zone 7,8,9	-			25						25			
		Zone 10,11	-				25					25			
		Zone 12,13	-					25				25			
		Zone 14,15	-						25				25		

PMS CHECK LIST

M/V : ELDORADO EXPRESS

ENGINE

점검표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비상배치표

(MUSTER LIST)

M/V ELDORADO EXPRESS

비상배치(해제)신호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후 비상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전원 비상배치)
 항계내 화재신호 :  (장음 5회 반복)
 퇴선신호 :  (연속음 약30초 이상)

종류 직책	소화 배치 (휴대품)	퇴선 배치	구명뗏목번호 (휴대품)	비상 조타 (휴대품)	수색 인명 구조 (휴대품)	오염 방제 (휴대품)	주기판 사고 대응 (휴대품)	충돌 방수 대응 (휴대품)	좌초 사고 대응 (휴대품)	밀폐구역 사고 대응 (휴대품)	안전/범행 대응 (휴대품)
선장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NO.1 탈출구 선교, 총지휘 대외업무	3 양방향무전기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항해사 A	현장지휘, 화재상황 소화방법, 선교와 연락 무전기, 안전동	NO.3 탈출구 선교와 연락	11 양방향무전기 EPIRB	가메워십, 무전기 선교와 연락	현장지휘, 무전기 선교와 연락	현장지휘, 무전기 선교와 연락 투표작업 준비	선수, 무전기 선교와 연락 투표작업 준비	현장지휘, 무전기 선교와 연락	현장지휘, 무전기 선교와 연락	현장지휘, 무전기 선교와 연락	현장지휘, 무전기 선교와 연락
항해사 B	선장보좌, 안전동 통신업무, 방화복	NO.4 탈출구 선교와 연락	12 양방향무전기 SART, 갑판일지	선장 보좌	선장 보좌 무전기	선장 보좌	선장 보좌	선장 보좌	선장 보좌 좌초지 정보입수	항해사 A 보좌 안전동	항해사 A 보좌
항해사 C	현장, 소화작업 소방원장구, 도끼	NO.1 탈출구	3 안전동	항해사 A 보좌	항해사 A 보좌 단정 강하준비 구명부환(자기점화등)	현장 방제작업	선수 투표작업 준비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안전동, 메트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도끼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안전동
갑판장	현장, 소화작업 안전동, 소방원장구	NO.2 탈출구	6,8 안전동	항해사 A 보좌	항해사 A 보좌, 모포 구명줄 및 사다리준비	현장 방제작업	선수 투표작업 준비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방치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항해사 A 보좌 진압요원
갑판수	현장, 소화작업 보조선수통, 안전동	NO.1 탈출구	5,7 안전동	항해사 A 보좌	임수	현장 방제작업	선수 투표작업 준비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각목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항해사 A 보좌 현장작업	항해사 A 보좌 진압요원
기관장	선교, 중요서류보관 기기운전, 기관실 지휘	NO.2 탈출구 선교, 기관조종	4 기판일지	선교 기판실 지휘	선교 기판실 지휘	선교 기판실 지휘	선교 기판실 지휘	선교 기판실 지휘	선교 기판실 지휘	선교 기판실 지휘	선교 기판실 지휘
기관사 A	기관실, 통풍방화문 소방원장구, 방화복	NO.3 탈출구	9 모포	가메와실(우현) 기관장 보좌	기 관 실(우 현)	현장, 각종기기조작 방제작업, 무전기	기관장 보좌 무전기	기관장 보좌 무전기	기관장 보좌 무전기	기관장 보좌 무전기	기관장 보좌 무전기
기관사 B	기관실, 방화문폐쇄 소화펌프운전 소방원장구 모포	NO.4 탈출구	10 모포	가메와실(좌현) 기관장 보좌	기 관 실(좌 현)	현장, 유출원 제거 방제작업, 개구폐쇄	기관장 보좌	기관장 보좌 기름탱크조사	기관장 보좌	기관장 보좌	기관장 보좌
기관사 C	현장, 잔류자 확인 방화문폐쇄, 소화펌프운전 모포	NO.2 탈출구	2 모포	기관사 B 보좌	임수	현장, 유출원 제거 방제작업, 개구폐쇄	기관장 보좌	기관장 보좌 기름탱크조사	기관장 보좌	기관장 보좌	기관장 보좌
기관사 D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NO.1 탈출구 여객 잔류자 확인	1 모포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객실 여객안내 비상의약품, 가스총

구명 뗏목 지휘	구명 뗏목 번호	객실(좌석) 배치	소집장소	구명 뗏목 지휘	구명 뗏목 번호	객실(좌석) 배치	소집장소
선장	NO.6 L/R	2층 F(44-72), H(1-64) 총 93명	No.2 탈출구	기관장	No.4 L/R	1층 라(30-84), 2층 F(1-43) 총 98명	No.2 탈출구
항해사 A	No.11 L/R	1층 바(41-50), 2층 G(17.18), I(1-34), A(1-15), C(1-26), D(1-7) 총 94명	No.3 탈출구	기관사 A	No.9 L/R	1층 마(1-58), 바(1-40) 총 98명	No.3 탈출구
항해사 B	No.12 L/R	1층 아(50-60), B(1-18), 2층 H(65.66), D(8-33), J(1-35) 총 92명	No.4 탈출구	기관사 B	No.10 L/R	1층 사(1-50), 아(1-49) 총 99명	No.4 탈출구
항해사 C	No.3 L/R	1층 사(16-70), 2층 E(1-44) 총 99명	No.1 탈출구	기관사 C	No.2 L/R	1층 다(1-70), 라(1-29) 총 99명	No.2 탈출구
갑판장	NO.6 L/R	2층 F(44-72), H(1-64) 총 93명	No.2 탈출구	갑판원	No.1 L/R	1층 가(1-84), 나(1-15) 총 99명	No.1 탈출구
갑판수	No.5 L/R	2층 E(45-82), G(1-16, 19-63) 총 99명	No.1 탈출구				

* 업무대행: 선장⇒항해사A, 기관장⇒기관사A, 항해사A / 기관사A ⇒ 항해사B / 기관사B

*비상시 여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승조원 및 선내방송의 지시에 따른다.

선장: _____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구분	주기	대상자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 선원
해상 안전 훈련	소화훈련	10일 모든 선원
	퇴선훈련	10일 모든 선원
	단정훈련	구명정 강하 3개월 모든 선원
		진수훈련 1년 모든 선원
해난사고 대응 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3개월 모든 선원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6개월 모든 선원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2개월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모든 선원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구분	비상상황 유형	보고 기준
1.	소화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퇴선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3.	비상조타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4.	인명구조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5.	기름유출대처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및 유출된 기름의 수거
6.	충돌 · 좌초 및 전복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의 확인 및 침수 방지와 전복으로 인한 비상대응 훈련
7.	추진기관 고장	신속한 보고와 효과적인 선조취를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상투표
※ 통신유지 사항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 시나리오 1 : 소화 · 퇴선 훈련
- ◎ 시나리오 2 : 수색인명구조 및 구조정 강하, 진수 훈련
- ◎ 시나리오 3 : 충돌사고 및 손상제어(방수) 훈련
- ◎ 시나리오 4 : 좌초사고 훈련
- ◎ 시나리오 5 : 오염방제 훈련
- ◎ 시나리오 6 : 비상조타 훈련
- ◎ 시나리오 7 : 주기관사고 훈련
- ◎ 시나리오 8 : 밀폐구역인명사고 대응 훈련

소화 · 퇴선 훈련 시나리오

◆ 소화·퇴설훈련 (좌,우현 기관실)

상황진행 : 좌현(우현)기관실 순찰중인 기관사 화재발생 사실을 헤드셋으로 선교 보고 함.

기관사 : 좌현,(우현)기관실에 B급 소형화재 발생했습니다.

선장 : 초기진화 지시 및 비상신호 발령!! (장애 5회)

좌현 기관실 통풍 차단, 연료 차단, 좌현 주기관 정지 및 우현 주기관 IDLE로 감속 지시!!

기관장 : 좌현 기관실 통풍 차단, 연료 차단,

좌현 주기관 정지 및 우현 주기관 IDLE로 감속 완료.

항해사 A : 선교 현장, (인원보고 후) 현재 소화기로 초기진화 시도 중입니다.

선장 : 알겠다, 계속 상황 보고하라.

1층 객실 담당자는 선미 주변 승객 선수로 이동 지시

항해사 A : 갑판수, 기관사(A)는 소화호스 준비 및 BA요원 착용지시.

선교 현장, 화력이 강하며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기관실 초기진화 반 철수 후, BA요원 및 소화호스 투입 하겠습니다.

선장 : 초기진화 반 철수하고 BA요원 및 소화호스 진입준비 하라!

항해사 A : 초기진화 반 철수, BA요원, 소화호스 준비!!

선교 현장, 인원보고 소화반 총원 OO명 집합 완료, BA요원 및 소화호스 준비 완료.

선장 : 소화펌프 작동 지시.

기관장 : 소화펌프 작동 완료.

항해사 A : 소화호스 압력상태 양호합니다. BA요원, 소화호스 투입하겠습니다.

선장 : 알겠다, 계속 상황보고 하라.

항해사 B는 안전관리책임자와 관계기관에 상황 통보 및 선내 방송하라.

항해사 A : 소화반 진입, 기관실 냉각!!(반복복창)

선교 현장, 소화반 화재진화중이며, 화재원인은 연료파이프 누유로 사료.

필요시 훈련추가: 선교 현장, 화재진압중 기관사가 넘어지면서 다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응급처치 후 들 것으로 환자보호실로 이송하겠습니다(2인 1조)

항해사 B :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좌현 기관실에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본선 선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승객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화재발생 부근의 접근을 금지 바랍니다.

항해사 B :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좌현 기관실 B급 소형화재가 발생**

**하여 자체 진화 중에 있으며 발생시간 OO시 OO분 침로 OOO도 속력 OO노트 현재 위치 북위
OO도 OO분 동경 OOO도 OO분이며 풍향 OO풍 풍속 OO미터 파고 O미터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 지원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본사에서는 긴급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불길이 더욱 거세져 자체 진화가 불가합니다. 고정식CO2 방출을 건의합니다.

선장 : 알겠다, 소화반 철수 후 인원보고 하고 기관실 폐쇄하라.

* 소화반 철수!!(복창)

항해사 A : 선교 현장, 인원보고 소화반 총원 OO명 확인완료, 기관실출입문 폐쇄 했습니다.

선장 : 알겠다, 기관장 CO2 방출하고, 항해사 A는 계속 기관실 냉각하라.

기관장 : 좌현 기관실 고정식CO2 방출 완료.

선장 : 현장 선교, 안전조치 준수하고 화재 현장 진화 상태 확인하라.

항해사 A : 화재 현장 확인(BA요원이 기관실출입문 온도확인)

선교 현장, 기관실 외벽 열기가 매우 강하며, 화재가 진화되지 않고 더욱 확산 되고 있습니다.
퇴선을 건의합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기관장과 상의하여 퇴선을 결정한다.

선장 : 총원 퇴선준비 하라 (단음7회 장음1회) * 총원 퇴선준비!!

양현 주기관 정지, 연료변 차단 통풍차단 지시. 구명뗏목 투하 지시

각자 구명조끼 착용, 개인 지참물 지참 후, 담당 객실승객들 인솔하여 탈출위치로 이동하라.

항해사 B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현 상황 통보, 선내 퇴선방송 지시

항해사 B :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자체진화에 임하고 있으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어 자체 진화 불가로 부득이하게 퇴선을 결정했습니다. 본선의 현재 위치는 포항항으로부터 북동쪽 약 00마일 떨어져 있으며 본선과 육상구조본부간에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해경구조선이 약 30분 후에 본선에 도착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질서 정연하게 선원의 안내에 따라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객여러분의 좌석 밑에 부착되어 있는 구명조끼 상자를 개방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소지품은 중요하고 간편한 휴대품만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퇴선 시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2층 객실 좌.우현 앞쪽과 뒤쪽 4군데 설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2층 객실 좌.우현 앞쪽과 뒤쪽 4군데 설치되어 있으니 서두르니 마시고 질서정연하게 퇴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사 B :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 진압에 실패하여 현 시간부로 퇴선을 시작합니다. 조속히 구조바랍니다.

현재 위치 북위 00도 00분 동경 000도 00분 승객 000명 선원 00명 총원 000명 기상 풍향 00풍 풍속 00미터 파고 00미터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으니 승객 및 선원들이 안전하게 퇴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비상탈출구 4곳, 모두 준비 완료.

상황진행 : 이 때 담당자들은 M.E.S 문 열지 말고 대기, 선교에서 원격으로 M.E.S 투하함.

항해사 A : 각 호정 구명뗏목 투하상태 확인 후 보고,

** M.E.S 문 열고 각 정장 인원 보고함. O호정 인원보고, 승객OO명, 선원1명 퇴선준비 완료 됐습니다.

선장 : 각 정장들은 승객들의 신발을 벗기고 위험물을 제거한 후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퇴선 할 것.

퇴선 순서는 군인이나 경찰 또는 건강한 청년 2명을 먼저 퇴선 시키고 어린이, 노약자, 여성, 남성 순으로 퇴선 시킬 것.

O호정 퇴선 하라.

** 5,1,3호정, 6,2,4호정, 11,9호정, 10,12호정 순서로 보고 후 퇴선.

상황진행 : 선장은 6호정만 남기고 모든 구명뗏목 이탈 시킨 후 잔류자 확인 후 퇴선 한다.

훈련 종료.

◆ 소화훈련 (객실)

상황진행 : 객실 순찰중인 OOO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무전기로 선교에 보고한 후 이동용 포말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면서 “불이야” 라고 외침.

선장 : 초기진화 지시 후, 비상신호 발령!! (장음 5회).

기관장 양현 주기관 IDLE로 감속하라.

상황진행 : 전 선원은 비상배치표에 의거 집결지로 긴급 집결한다.

객실 담당 선원은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이동용소화기를 소지한 선원은 현장으로 초기진화에 투입된다.

BA요원은 장비를 착용하고 기타 선원은 소화호스를 준비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주변승객 대피시키고, 현재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시도 중입니다.

선장 : 항해사 B는 객실 안내방송을 실시하라.

항해사 B :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O층 객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본선 선원들이 자체 진화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요하시지 마시고 선원들을 믿고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 발생 부근의 접근을 금 하니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비하시고 계속되는 안내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화력이 강하며,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초기진화 반 철수 후, 소화호스 투입 하겠습니다.

선장 : 소화반 철수하고 소화호스 준비하라.

*소화반 철수, 소화호스 준비!!

기관장은 소화펌프 준비하라.

항해사 B는 안전관리책임자와 관계기관에 상황 통보하라.

항해사 B :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O층 객실에서 A급 소형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중에 있으며 발생시간 00시 00분 침로 000도 속력 00노트 현재 위치 북위 00도 00분 동경 000도 00분이며 풍향 00풍 풍속 00미터 파고 0미터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 지원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본사에서는 긴급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인원보고 소화반 총원 OO명 집합완료. BA요원 및 소화호스 준비완료.

선장 : 알았다, 기관장은 소화펌프 작동하라(선교작동) *소화펌프 작동

현장 선교, 소화호스 압력상태 보고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소화호스 압력상태 양호. BA요원 소화호스 투입하겠습니다.

선장 : BA요원 소화호스 잡고 화재현장 투입하고 계속 상황보고 하라.

항해사 A : 소화반 전진.

상황진행 : BA요원 및 보조요원은 현장에 투입되고 기타 요원은 승객들이 화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한다

항해사 A : 소화반 전진.

상황진행 : BA요원 소화호스 이용하여 화재 진압에 성공한다.

항해사 A는 BA요원 및 보조요원에게 잔불 확인 지시 후 선교에 보고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화재 진압에 성공했으며, 현재 잔불확인중입니다.

선장 : 알았다. 화재현장 철저히 통제하고 진화 상태 재확인 후 보고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선장 : 알았다. 화재현장 계속 통제하고 승객들 질서유지에 임하라.

항해사 B는 화재 진화되었음을 선내 안내방송 실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라.

항해사 B :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O층 객실 화재는 선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되었으니 안심하시고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O층 객실 화재는 선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되었으니 안심하시고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사 B :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본선 O층 객실 화재는 자체 진화에 성공하여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승객 000명 선원 00명 총원 000명 인명피해 없습니다.

현재 위치 북위 00도 00분 동경 000도 00분 풍향 00풍 풍속 00미터 파고 00미터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알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으니 승객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종료.

수색인명구조 및 구조정 강하, 진수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포항항을 출항하여 울릉도로 항해 중 여객 1명이 바다로 추락, 기관사가 순찰 중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명부환을 투하한 후 선교에 보고하고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선장 : 좌현선미 익수자발생, “수색인명구조원배치” 비상신호(장음 5회) 발령 및 좌현 전타.

상황진행 : 선장은 항해사에게 현재의 시간, 위치 및 기상 등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상황보고를 지시한다.

항해사B : “익수자 발생사실을 본사, 운항관리실, 해경에 통보하겠습니다.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에 익수자 발생하여 현재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간은 ○○시○○분
침로○○○도 속력○○노트 현재위치 북위○○도○○분 동경○○○도○○분이며 현재 기상
온 풍향○○풍 풍속○○미터 파고○미터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항해사 B : “선장님! 사고발생 사실을 본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수색인명구조요원 선미갑판에 집합완료”

선장 : “현재 싱글 턴(또는 월리암슨 턴) 사용 중이다.”

“항해사 A는 익수자 위치 발견되면 보고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익수자 발견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항해사 A는 현장요원의 경계 위치를 배정하고 구조정 진수 요원에게 진수 준비를 지시한다.

선장 : 현장 선교, “11시 방향 200미터에 익수자 발견했다. 현장 익수자 위치 파악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11시 방향 200미터 익수자 발견.” 복창

선장 : 기관장에게 양현 주기관 IDLE 지시. 항해사 B에게 선내 안내방송 지시.

상황진행 : 현장요원들은 익수자 위치를 구령 복창하고 현장요원에게 구명부환 및 히빙라인 준비, 각 담당자에게 구급약, 모포, 들것을 준비시킨 후 구조정 진수를 명한다.

항해사 B :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에 익수자가 발생하여 본선 선원들이 자체 구조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요하지 마시고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안내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판장 : “11시 방향 100미터에 익수자 발견하였습니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익수자 위치 파악하였으며 구조정 진수 완료.

선장 : 현장 선교, 구조정 엔진 테스트 후 이탈 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구조정 이탈하여 익수자에게 접근 중입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았다. 익수자 구조 후 보고 바람.

항해사 A : 선교 현장, 익수자 구조 완료(익수자 구조정 탑승 완료) 및 건강상태 양호 보고.

선장 : “알았다. 부상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선으로 복귀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본선 도착 50미터 전.

항해사 A : 선교 현장, 본선 복귀 완료.

선장 : 현장 선교, 구조정 격납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구조정 격납완료, 익수자 선내로 이송 완료.

구조정 탑승 선원 3명, 익수자 1명 이상 없습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수고했다. 마무리 정리하고 익수자 계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바란다.

항해사 B는 현 상황 회사 및 관계기관 보고하라.

항해사 B :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에서 발생한 익수자 구조가 완료되어 본선은 정상 운항을 재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현재 본선에서 발생한 익수자 구조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익수자 건강상태도 양호합니다. 본선 정상 운항을 재개합니다. 현재 시간은 ○○시○○분 현재위치 북위○○도○○분 동경○○○ 도○○분이며 침로○○○도 속력○○노트 풍향○○풍 풍속○○미터 파고○미터입니다.

항해사 B : 회사 및 관계기관 보고 완료.

훈련 종료.

충돌사고 및 손상제어(방수)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월 ○○일 울릉에서 포항으로 항해 중 ○○시 ○○분 어선과 충돌 사고 발생.

선장 : “우현 선수 어선과의 충돌사고 발생.

충돌방수대응부서배치 비상신호 발령, (장음 5회).

항해사 A : 선교 현장, “충돌방수대응부서 ○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점검 후 보고하겠습니다.” “본선 우현 No.1 Void 내 약 30cm 파공 발생, VOID 내 약 20cm의 해수가 침수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상대선박은 선수부위 파손되었고 약간의 침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대선박 낙수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장 : “현장-선교, 파공부위 응급조치하고 상황 보고하라.”

“항해사 B는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알리기 바란다.”

상황진행 : 항해사 B는 다음 사항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항해사 B :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현재 본선이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본선 선원들이 자체 조사 및 조치 중에 있으니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상은 풍향○○풍 풍속○○미터 파고○미터입니다.

- 1) 충돌일시, 장소
- 2) 충돌의 원인 및 충돌 시 상황 (속도, 침로, 상호관계)
- 3) 인명, 선체 적하의 손상
- 4) 주기사용가능여부
- 5) 기름유출 유무 및 구조필요여부
- 6) 응급처치와 금후의 방침
- 7) 상대선 국적, 선명, 손상정도
- 8) 충돌 후 현재까지의 상황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이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본선 선원들이 자체 조사 및 조치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요하지 마시고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안내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 현장-선교, 상대 선박이 자력으로 가까운 항까지 운항 가능한지 확인 바란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상대선은 자력으로 포항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출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본선 파공 부위는 수선 상부입니다. 응급조치 완료하였으며 Void 내 침수는 빌지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였습니다. 현장요원 철수하고 수밀문을 폐쇄하겠습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았다. 완료되면 보고하라.

항해사 B는 상황을 종료하니 현 상황 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현장 전원 ○명 철수 완료.

상황진행 : 항해사 B는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항해사 A : “충돌방수대응부서 총원○명 현재원○명 응급방수조치 후 수밀문 폐쇄하고 철수하였습니다. 항해해도 좋겠습니다.”

항해사 B :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임시조치가 완료되었으나 본선과 승객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본선은 부득이하게 포항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현재 본선에서 발생한 어선과의 충돌사고의 임시조치가 완료되었으나 본선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포항항으로 회항 하겠습니다.

상대 어선도 자력 항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시○○분 현재위치 북위○○도○○분 동경○○○도 ○○분이며 침로○○○도 속력○○노트 풍향○○풍 풍속○○미터 파고○미터입니다.

훈련 종료.

좌초사고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월 ○○일 포항항 입항 중 돌풍으로 인하여 포항 송도해수욕장에 좌초사고 발생.

선장 : 좌초사고대응 비상부서배치 발령 (장음 5회)

항해사 B에게 좌초시간, 위치, 흘수, 수심, 저질, 조석, 조류 등을 확인 지시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좌초사고대응 부서배치 완료.

선장 : 현장 선교, 항해사 A는 전 VOID 탱크를 점검하고 양현 측심을 실시 한 후 보고하라. 갑판부는 수밀문 폐쇄 확인하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실 전반 순찰하여 선체 주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고하라.

상황진행 : 전 승무원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체 전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항해사 A는 갑판장 에게 측심 및 VOID를 점검하도록 지시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본선 좌현 NO.1 VOID 선저가 해저(모래)에 좌초되어 약 20cm 균열이 발생했으며, 해수가 유입중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모포 및 쇄기로 임시조치 가능 하겠습니다.

선장 : 현장 선교, 균열 부위 임시조치하고 상황 보고하라.

항해사B는 현재 상황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선내 안내방송 실시하라.

상황진행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선장입니다. 포항 입항 중 돌풍에 밀려 좌초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객 안전사고 없으며, 본선 좌현 NO.1 VOID에 약 20cm 균열이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되고 있으나, 본선 자체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여객 및 선박 안전을 위해서 지원 요청 바랍니다.

주기관 상태는 양호하며, 기타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예,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항해사 B :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이 포항항 입항 중 돌풍에 송도해수욕장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상황 파악 및 임시조치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간은 ○○시○○분 현재위치 북위○○도○○분 동경○○○도○○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풍 풍속○○미터 파고○미터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이 포항항 입항 중 돌풍에 의해 송도해수욕장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임시조치 중에 있으니 동요하지 마시고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부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안내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좌현 NO.1 VOID에 발생한 균열 부위는 임시조치하고 유입된 해수는 배출완료 하였습니다. 소량의 해수 유입은 있으나, 포항 여객선터미널까지는 자력으로 입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요원 철수하고 수밀문을 폐쇄하겠습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았다. 완료되면 보고하라.

항해사 B는 상황을 종료하니 현 상황 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현장 전원 ○명 철수 완료.

상황진행 : 항해사 B는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좌초대응부서 총원○명 현재원○명 응급방수조치 후 수밀문 폐쇄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자력항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해사 B : 승객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에서 발생한 좌초사고의 임시조치가 완료되어 기상이 호전 되는대로 포항항으로 이동하

도록 하겠습니다. 선내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현재 본선에서 발생한 좌초사고의 임시조치가 완료되었으며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포항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시○○분 현재위치 북위○○도○○분 동경○○○도 ○○분이며 풍향○○풍
풍속○○미터 파고○미터입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겠다.

회사에 현 상황 보고 후 돌풍이 잦아지면, 자력으로 입항이 가능하다고 통보.

안전관리책임자 : 만일에 상황에 대비 후, 자력으로 입항하시기 바랍니다.

선장 : 감시요원 배치 후, 자력으로 입항.

상황진행 : 선장은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 및 검사철자를 의논하다.

오염방제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포항항 입항 후 기관부 연료유 수급 중 BUNKER STATION에서 CONNECTOR 연결 불량으로 기름 유출 사고 발생함.

기관사 : 탱크로리 기사에게 즉시 펌프 작동 정지를 요청한 후,
기름 유출 사실을 조타실에 보고함.

선장 : 오염방제부서배치 비상신호 발령함 (장음 5회)

항해사 A : 선교 현장, 오염방제부서 ○명 선미갑판에 배치완료.

선장 : 현장 선교, 오염상황 확인 후 보고바람.

항해사 A : 선교 현장, 확인 결과, 기름 호수 CONNECTOR 연결 상태불량으로 현재 10리터 정도는
선미갑판에, 그리고 20리터 정도는 해상에 유출된 상태입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지금부터 절대 금연을 실시한다. 기관부는 결례를 이용하여 선미갑판에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에 임하고 갑판부는 유흡착제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 제거 및 확산 방
지 작업에 임하라.

항해사 B는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라.

항해사 B : 해양오염 발생사실을 회사 및 관계기관 통보하겠습니다.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연료유 수급 중 CONNECTOR 연결 불량으로 인해
현재 약 20리터의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현재 전 선원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갑판에 유출된 기름은 거의 제거
했으나, 해상에 유출된 기름 중 일부가 선미 쪽으로 조금 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항 방제조합에 방제선 요청 바랍니다.

선장 : 현 상황 회사에 보고 후 방제선 요청함. (5분 후 도착예정)

항해사 A : 선교 현장, 방제선 도착하여 본선 주변에 오일펜스 설치 완료한 후, 본선에서 살포한 유흡착
제 수거 및 잔류 기름제거 작업 중입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았다. 계속 상황 확인 후 보고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방제선 작업 완료하여 복귀한다고 합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았다. 주변 정리하고 철수하라.

현 상황 (방제선 방제작업 완료) 회사에 보고.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현재 해상에 유출된 기름 제거 완료되어 방제선도 복귀했
으며 본선에서도 유출된 기름 제거 완료했습니다.

훈련 종료.

비상조타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월○○일○○시 울릉항 입항 시 침로가 유지되지 않는 고장발생.

선장 : “총원 비상조타 부서배치 비상신호 발령(장음 5회)”

상황진행 : 항해사 B는 RADAR 및 육안으로 본선위치, 본선항적, 선수방위, 해상상황, 조류방향, 주변 선박 유무, 해안선까지 지리파악, 조종불능선 신호(흑구 2개)표시 지시, 접근선박에게 경고음향 신호 취명하고 VHF, SSB 등 통신망을 통해 회사 및 항만당국, 운항관리실 등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기관사 A&B는 좌우현 타기실 도착하여 현장상황을 TALK BACK을 사용하여 선교에 보고한다.

선장 : 항해사 B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현 상황 통보하라.

항해사 B :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울릉항 입항 중 침로가 유지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여 현재 원인 확인 중이며 비상조타로 운항중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기관사 A : “선교-현장, 우현 타기실 비상조타 준비완료.”

기관사 B : “선교-현장, 좌현 타기실 비상조타 준비완료.”

항해사 A : “선교-현장, 선미 부근 항행선박 및 특이사항 없습니다.”

항해사 B : “선교-현장, 선장님 조종불능 신호표시 및 관계기관 보고완료 했습니다.”

선장 : “현장-선교, 알았다. 좌우현 타기실 우현 ○°”

“항해사 B는 선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라.”

기관장 : “좌우현 타기실 우현 ○°”

기관사 A : “우현 타기실 우현 ○°”

기관사 B : “좌현 타기실 우현 ○°”

항해사 B : “선내 안내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선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은 조타장치 이상으로 비상조타로 감속 운항 중에 있으며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서 예인선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승객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 A : “우현 타기실 우현 ○° 잡았습니다.”

기관사 B : “좌현 타기실 우현 ○° 잡았습니다.”

항해사 A : “선교-현장. 좌우현 타기실 우현 ○° 정침하였습니다”

선장 : “현장-선교, 좌우현 타기실 좌현 ○°”

기관장 : “좌우현 타기실 좌현 ○°”

기관사 A : “우현 타기실 좌현 ○°”

기관사 B : “좌현 타기실 좌현 ○°”

기관사 A : “우현 타기실 좌현 ○° 잡았습니다.”

기관사 B : “좌현 타기실 좌현 ○° 잡았습니다.”

선장 : 현장 선교, 항해사 A는 예인선이 도착 시 좌현 선수에 예인줄을 잡도록 한다.

상황진행 : 선장은 비상조타와, 예인선의 도움으로 울릉항에 접안할 예정임.

항해사 B는 여객 동요 방지를 위해 현 상황을 간략하게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항해사 A : 예인선 도착하여 좌현 선수에 예인선 잡았습니다.

항해사 B : 선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은 조타장치 이상으로 비상조타로 감속 운항 중이었으며 예인선이 본선과 연결된 상태로 안전한 울릉항 접안이 가능하니 동요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진행 : 예인선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울릉항에 입항 완료하였음.

선장 : 현 상황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함.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현재 본선은 예인선의 지원으로 울릉항에 안전하게 접안을 했습니다. 추후 원인 확인 후 통보하겠습니다.

훈련 종료.

주기관사고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월○○일○○시 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로 항해 중 포항항에서 ○○마일 떨어진 곳에서 PIME 및 POME의 이상을 발견한다. 당직자는 선장과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 한다.

선장 : 기관장에게 PIME 및 POME 정지 및 원인 파악 지시.

“총원 주기관사고 대응부서 배치 비상 신호 발령(장애 5회).”

선내 안내방송 지시.

상황진행 : 선장은 항해사 B에게 주변 선박들의 동정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운전 부자유선 신호 (혹구2개) 표시를 지시하고 경고음향신호를 취명한다.

안전관리책임자와 관계기관에 통보, 타 선박에게 안전통신 또는 경고신호를 송신하고 최대한 안전한 구역으로 선박을 조선한다.

기관장 : PIME 및 POME 점검 결과 STEERING 및 BUCKET의 유압펌프(PTO PUMP)의 고장으로 항해 중 수리 불가함.

선장 : 포항으로 회항 지시 후 회사 및 관계기관에 현 상황 통보

“항해사 B는 현 상황을 선내방송실시하라.”

기관장에게 현재 “PIME 및 POME를 정지하고 항해하니 다른 주기관 상태를 자주 관찰하여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하라.”

항해사 B : 선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은 일부 주기관 고장으로 감속 운항 중에 있으며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여 예인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른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승객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라며 본선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포항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운항 중 침로가 유지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여 현재 원인 확인 중이며 비상 조타로 운항중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기관장 : 기관실 순찰 강화를 통해서 SIME 및 SOME의 작동 상태를 더 세밀하게 점검 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항해사 B는 선내방송을 통해 상황을 방송한다. 선장과 기관장은 예인선 사용 및 육상지원팀 수배요청을 의논 후 회사에 연락한다. 항해사 B는 기관고장과 관련된 상세한 기사를 관련문서에 기재한다.

기관장 : “선장님! SIME 및 SOME는 정상작동 중입니다.

선장 : 알았다. 기관부는 기관 상태를 계속 주시바랍니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11시 방향 300m 예인선 1대 접근 중입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예인선 도착 시 좌현 선수에 예인줄 잡아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좌현 선수에 예인줄 잡았습니다.

상황진행 : SIME과 SOME으로 감속 운항하여 예인선 지원 및 SIME, SOME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항 항에 접안한다.

선장 : 현 상황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함.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현재 본선은 예인선의 지원으로 포항항에 안전하게 접안을 했습니다.

훈련 종료.

밀폐구역인명사고 대응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포항항 정박중 항해사 C가 ()번 VOID를 점검하다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쓰러진다.

대기 중이던 항해사 B가 즉시 선교에 보고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번 VOID 점검 중이던 항해사 C가 쓰러졌습니다.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았다, “총원 밀폐구역인명사고대응 부서배치” 발령(장음 5회)
(선내방송) ()번 VOID에 의식불명자 발생, 현장요원 배치하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현 상황 통보 및 지원 요청.

항해사 B :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선장입니다. 현재 ()번 VOID에 항해사 C가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본선 구조요원이 구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께서는 즉시 해경 또는 119 지원 요청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알았습니다. 즉시 유관기관 및 119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구조요원의 안전도 유의해 주시고 수시 상황 보고 바랍니다.

상황진행 : 비상배치 요원은 밀폐구역 진입을 위한 구조장비를 준비하여 화물구역에 집합한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현장 인원 보고 O명 집합 완료.

선장 : 현장 선교, 이동용 FAN 설치하고 밀폐구역 산소농도를 측정하라.

그리고 의식불명자 구조를 위한 들것 및 로프를 준비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이동용 FAN 설치하여 환기중이며 들것, 로프 준비 완료.
현재 밀폐구역 산소 농도는 ()%입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진입하여 인명구조에 임하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

항해사 A : 선교 현장, 진입 하겠습니다.

선장 : 현장 선교, 현재 해경 및 119에 지원 요청을 한 상태이며 10분 후 도착 예정이니 항해사 C 구조 완료 후 상태 보고 바람.

항해사 A : 선교 현장, ()번 VOID에서 항해사 C를 구조 하였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즉시 119 지원 요청 바랍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았다. 환자를 바람이 잘 통하는 외부로 이동시키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바란다.

항해사 A : 선교 현장, 알겠습니다.

선장님, 119 구급대 도착했습니다. 인계하겠습니다.

선장 : 현장 선교, 알았다, 119 구급대에 상황 설명하고 인계하라.

선장 : 현 상황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함.

여기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본선에서 발생한 밀폐구역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으며 119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상황진행 : 119에 환자를 인계 후 상황 종료 한다.

훈련 종료.

구명설비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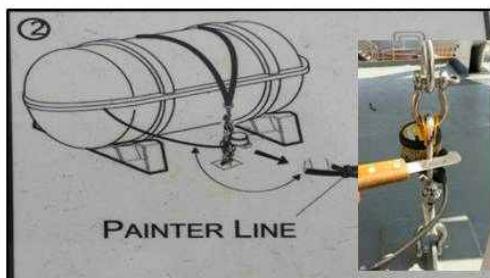
구명뗏목 사용 설명서

LIFERAFTS IN ROUND CONTAINER

OPERATING INSTRU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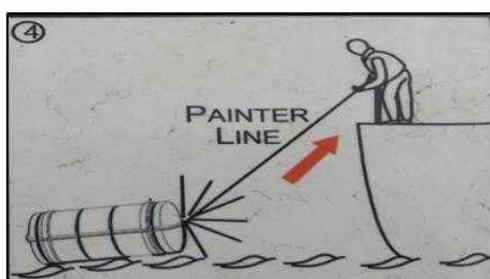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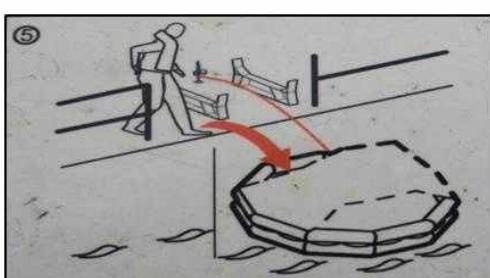
구명뗏목 고정줄을 칼로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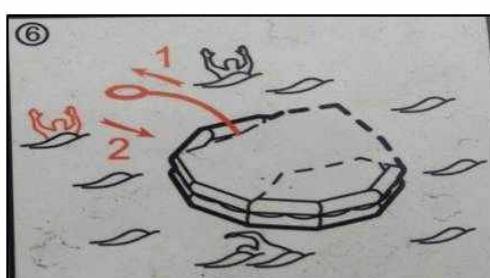
구명뗏목을 투하한다.



팽창줄을 잡아당긴다.



슬라이드 설치 후
구명뗏목으로 뛰어내린다.



해상에 표류중인 사람을
구명뗏목에 태운다.



본선의 연결줄을 절단한다.



가능한 본선에서 멀리 떨어진다.

소화기 사용법

HAEWON
한국제강조립

《 소화기 사용방법 》

FIRE EXTINGUISHER HOW TO USE

- ① 소화기를 불난 곳 가까이(3m 정도) 접근한다.
- ② 안전핀을 빼고 노즐을 불난 곳을 향하게 한다.
- ③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바람을 등지고
비로 쓸듯이 앞에서부터 뿌려 나간다.

1. 안전핀을 뽑고
PUT OUT SAFETY PIN

2. 호스를 불난 곳으로 향하고
DRAW OUT THE HOSE

3.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힌다
SQUEEZE THE LEVER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해제)신호 : ● ● ● ● ● ●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후 비상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전원 비상배치)
 - 항계내 화재신호 : ━ ━ ━ ━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 (연속음 약30초 이상)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 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연번	장비 · 시설	수량	설치장소
항해	1	레이더 (Furuno FAR-22218)	2	선교
	2	ECDIS(전자해도시스템 Furuno FMD-3200BB)	1	선교
	3	VDR(항해기록장치 Furuno VR-7000)	1	선교
	4	AIS(선박자동식별장치 Furuno FA-170)	1	선교
기관	1	주기관(CAT C280-16)	4	기관실
	2	발전기(CATERPILLAR C7.1)	4	기관실
	3	워터젯(KAMEWA S90-4)	4	워터젯룸
통신	1	MF/HF DSC TX/RX Radio(FS-2575)	1	선교
	2	VHF(FM-8900S)	2	선교
구명	1	구명조끼(성인용)	1,044	선내전체
	2	어린이용 구명조끼	99	선내전체
	3	유아용 구명조끼	50	선내전체
	4	구명부환(30M 구명줄 붙이)	2	좌·우현 갑판
	5	구명부환(자기점화등)	2	좌·우현 갑판
	6	구명부환(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원격투하	2	좌·우현 갑판
	7	팽창식구명뗏목(100인용)	12	좌·우현
	8	해상탈출장비	4	2층 탈출구
	9	구조정	2	선미 좌·우현
	10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3	선교
	11	레이디 트랜스폰더	2	선교
	12	EPIRB	2	선교
소화	1	CO2 소화기 5KG	2	선교, 전기실
	2	소화기(9L FOAM)	12	기관실 좌·우현
	3	소화전	13	객실, 기관구역
	4	소화기(6kg POWDER)	8	선내
	5	소화기(12kg POWDER)	5	선내
	6	고정식 CO2 소화설비	1	1층 좌현선미

[붙임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관련 문서
영구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증서 ○ 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 운항관리규정 관계 ○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 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 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5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 선박검사 관계 ○ 선박점검 관계 ○ 해양오염방지 관계 ○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 선원교육 관계 ○ 해사정보(사고속보, 항행정보, 기관정보, 항만정보) ○ 외부기관 점검 관련 기록
3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관리 관계 ○ 선원자격 관계
1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6개월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붙임15] 문서관리대장

서류

구 분	문 서 명	보존 기간	관리자
1	선박안전위원회	5년	선장
2	문서 MASTER LIST	영구	
3	공문서 발신대장	3년	
4	공문서 수신대장	3년	
5	해사정보	5년	
6	사내업무문서	5년	
7	해도 간행물 소개정 기록부	5년	
8	항행통보 수급 현황표	5년	
9	선박도면 목록도	영구	선장
10	기록 MASTER LIST	영구	1등항해사
11	선원 업무 인수인계서	5년	선장
12	방선점검결과 보고서	5년	선장
13	선박 일일업무 보고서	5년	
14	월 정박 당직표	3년	2등항해사
15	입·출항 전·후 점검표	3년	
16	특수 항해 점검표	3년	
17	항해계획표	3년	
18	특별 보호 여객 명부	3년	1등항해사
19	여객 안전 관리 점검표	3년	
20	격리 감호 여객 기록부	3년	
21	위험물품 관리 기록부	3년	
22	PMS ITEMS	영구	
23	PMS 월간 정비계획 실행 보고서	5년	
24	PMS CHECK LIST	5년	
25	DOCKING INDENTS	5년	
26	법정비품 및 주요기자재 LIST	영구	
27	기부속 청구서	5년	
28	선용품 청구서	5년	
29	외주정비수리 신청서	5년	
30	INVENTORY FOR SPARE PART	5년	선장, 기관장
31	의약품 현황표	3년	
32	선박위생 관리점검표	3년	
33	교육 훈련 계획 시행표	5년	
34	교육 훈련 기록표	5년	
35	승선자 CHECK LIST	5년	선장, 기관장
36	사고 보고서	5년	
37	내부심사 점검표	5년	
38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 근로기록 서류	5년	1등항해사
39	부적합사항 관리대장	5년	
40	부적합사항 보고서	5년	
41	운항관리규정	영구	선장
42	복원성 자료	영구	
43	여객선이력관리장부, 여객선 안전정보	영구	
44	항해일지	영구	선장
45	기관일지	영구	기관장
46	Oil Record Book	5년	1등기관사
47	Garbage Record Book	5년	
48	GMDSS Radio Log Book	5년	1등항해사

도면목록

연번	도면(명)	보존기간	관리자
1	General Arrangement	영구	선장
2	Lifting Plan	영구	선장
3	Hull structure midship section	영구	선장
4	Hull structure longitudinal section	영구	선장
5	Hull structure details	영구	선장
6	Hull structure typical frame	영구	선장
7	Shell plate thickness	영구	선장
8	Superstructure General construction plan 1	영구	선장
9	Superstructure General construction plan 2	영구	선장
10	Superstructure General construction plan 3	영구	선장
11	Superstructure General construction plan 4	영구	선장
12	Tank arrangement compartment plan	영구	선장
13	Hatches and doors plan	영구	선장
14	Fender arrangement	영구	선장
15	Mast construction	영구	선장
16	Cathodic Protection Plan	영구	선장
17	Propulsion Arrangement	영구	선장
18	Bilge system	영구	선장
19	Bilge water storage system	영구	선장
20	Internal fire fighting system	영구	선장
21	Fuel oil system	영구	선장
22	Cooling water system	영구	선장
23	Sanitary fresh and seawater system	영구	선장
24	Sanitary discharge system	영구	선장
25	Filling, sounding, deaeration	영구	선장
26	Lubrication oil system	영구	선장
27	Life saving plan	영구	선장
28	Fire control plan	영구	선장
29	Evacuation plan	영구	선장

중서목록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선박국적증서	영구	선장
2	선급증서	영구	선장
3	선박검사증서	영구	선장
4	해양오염방지증서	영구	선장
5	무선국검사증명서(무선국허가증)	영구	선장
6	승무정원증서	영구	선장
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영구	선장
8	임명장(응급처치담당자, 안전담당자,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여객안전관리선원, 안전관리책임자)	영구	선장
9	보험증서(P&I, 선원, 선박, 여객)	영구	선장

[붙임 16]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아래 사항을 협의한다.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 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7]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부심사부적합사항보고서		부적합번호(부)
		발행일자
<input type="checkbox"/> 내부심사 <input type="checkbox"/> 고객불만사항 <input type="checkbox"/> 자체발행		대상부서
* 부적합사항 <input type="checkbox"/> 중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경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권고사항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		
해당부서장		심사자(발행자)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		심사팀장 조치기한
시정조치부서		검토(심사)일
*시정조치내용		시정조치일자 시정조치부서장
*시정조치확인결과		<input type="checkbox"/> 종결승인 <input type="checkbox"/> 재조치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 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		
확인일자		확인(승인)자
*유효성/효과 검토 결과		종결일자: 최종확인자:

내부심사점검표		심사대상		
		심사종류	년도(□정기 □특별)	
심사목적	심사기간			
운항관리규정 항목	부적합	권고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책임심사자	
2.안전관리 조직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4.운항기준도				
5.선장의 보고사항				
6.위험물 취급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구분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12.문서 및 자료관리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원인별 분석	
14.내부심사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평가				
합계				
심사결과 요약 및 분석				
유첨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작성일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붙임 18] 여객선 정기 점검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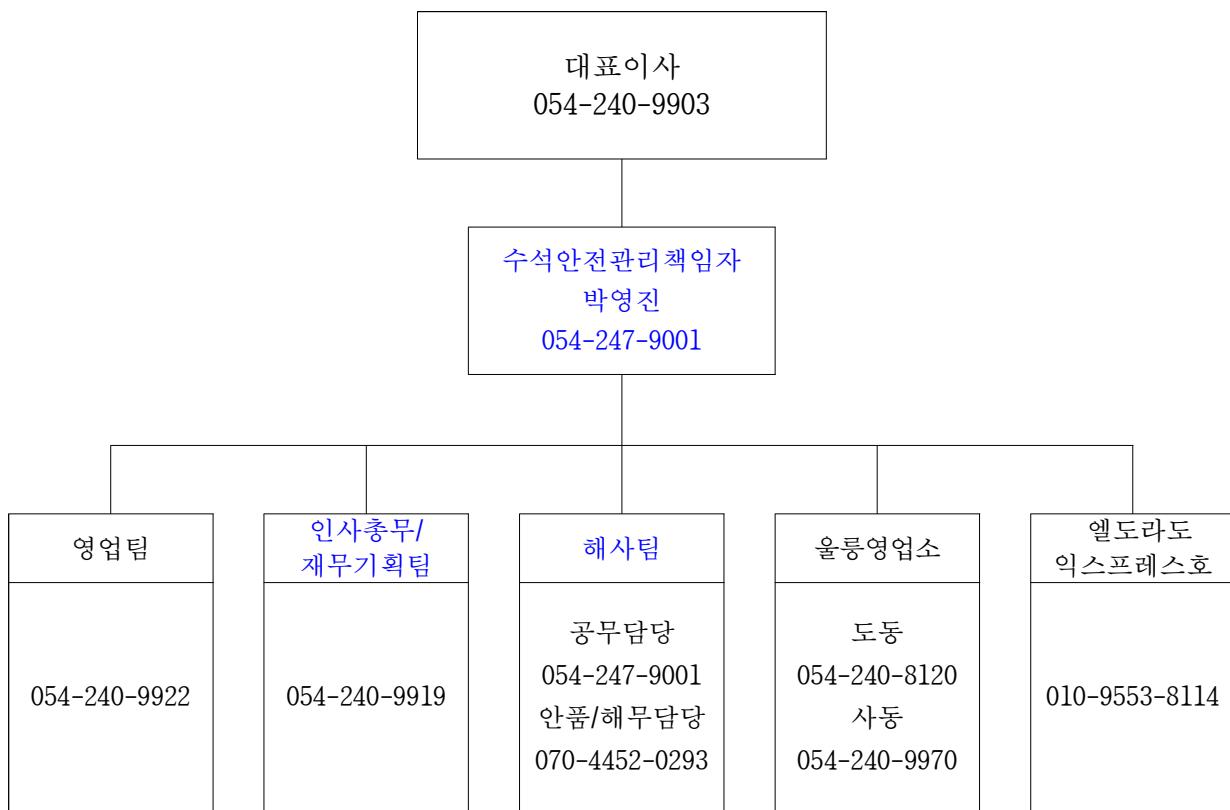
여객선 정기 점검표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로 표시합니다.

선명(선박번호)	()		기관마력	hp	
항로 및 항해구역			진수연월일	. . .	
점검사항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선체	선체 및 도장 상태		구명설비	구명기구 · 신호장치 상태	
	흘수 상태			진수장치 상태	
기관	기관정비 상태		화물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통신	통신기 작동 상태		일지기록	비상훈련의 이행여부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항해 용구	항해계기 정비 상태		보안시설	항해일지의 기록여부	
	조타설비 상태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닻 · 쇠사슬 및 로프 상태			보안 · 청원경찰의 승선 유무	
	속구(屬具) 및 비품 비치 상태				
소방 설비	소화 및 비상펌프 정비 상태		위생설비 기타	여객선의 청결 상태	
	소화전 · 호스 · 소화기 상태			화장실의 위생 상태	
	소방수통 상태			방송 · 난방 · 통풍 시설	
육상 시설	육상 승선 · 하선 시설		기타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종선의 운영 상태			선원의 처우 상태	
위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이번의 지적사항		시정기한			
점검일시 : 년 월 일 점검 및 입회자 선장 ☐, 사업자 ☐					

[붙임19] 안전관리조직도



※ 조직내 상호간 연락은 사내 비상연락망에 의함